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등록증명서는 「항공기등록령」 제15조에 따라 등록원부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발급되나, 최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합병추진에 따라 외국 항공당국과의 협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항공기 운항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포함하여 등록의 효력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 관련 행정절차의 진행상태를 등록증명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증명서 재발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대상 사전검토 결과 ‘비대상’

국토교통부령 제 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기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로 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를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증명서에 참고사항을 기재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증명서,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른 참고사항을 삭제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증명서 및 사유서

제18조 제4항 중 “인수·합병 등의 사유가 있어 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른 항공기 탑재의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참고사항 기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의 효력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항공기 등록과 관련된 행정절차 진행상태를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증명서번호 Registration No.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1. 국적 및 등록기호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	2.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 Manufacturer and manufacturer's designation of aircraft	3.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Aircraft serial no.
4. 항공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owner 항공기 임차인의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lessee		
5.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 Address of owner 항공기 임차인의 주소 Address of lessee		
6. 위 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조약」(1944년 12월 7일) 및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민간항공기 등록원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described aircraft has been duly entered on the civil aircraft register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dated 7 December 1944 and with the Civil Aviation Safe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참고사항 Notes 본란의 기재사항은 위 항공기에 대한 등록의 효력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The information set forth in this section shall not affect legal effect of the entries recorded in the civil aircraft register in respect of the above described aircraft.		
발행 연월일 Date of Issue		
국 토 교 통 부 장 관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항공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항공기 종류 형식		등록기호 HL 등록증명서 번호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국적			
임차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국적			
사유			

「항공기등록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명칭 :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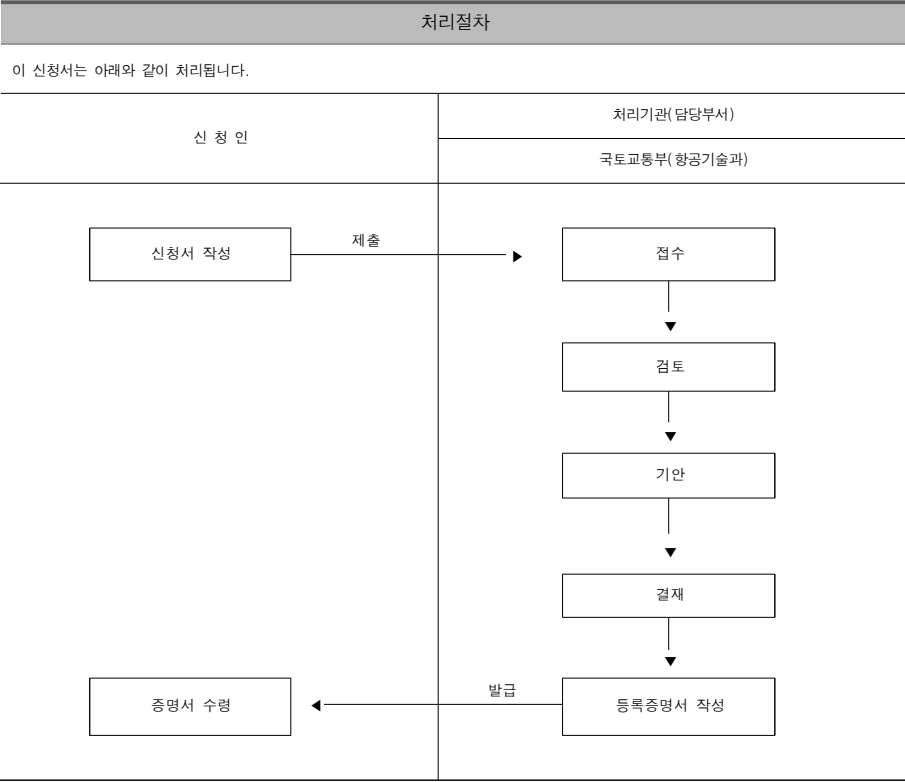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항공기등록규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서	수수료
	2. 「항공기등록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명서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3. 「항공기등록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등록증명서,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항공기등록규칙」 제1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등록증명서, 사유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 (생략)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증명서에 참고사항을 기재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증명서,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설>	4. 제3호에 따른 참고사항을 삭제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증명서 및 사유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기업의	④ ----- ----- ----- -----

인수·합병 등의 사유가 있어 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른 항공기 탑재의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
<신설>	제18조의2(참고사항 기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의 효력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항공기 등록과 관련된 행정절차 진행상태를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